

# 울 산 지 방 법 원

## 제 2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           건            2013나5411 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
원고, 피항소인            망 A의 유언집행자 B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태원  
피고, 항소인            C  
제 1 심 판 결            울산지방법원 2013. 9. 4. 선고 2012가단36349 판결  
변 론 종 결            2014. 1. 15.  
판 결 선 고            2014. 2. 19.

#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#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물금읍 중산리 대 271㎡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. 10. 5. 접수 제519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추가 판단 부분

피고는 먼저, 수증자 중 1인인 원고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의 증인인 D는 수증자 중 1인인 E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,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 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문춘언

판사      손주희

판사      이예림